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5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023호

시행일자 2024. 7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(2024년 7월)

1. 관련근거 : 건보공단 신약관리부-1214(2024.7.3.)

2.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으로 변경내용 및 확인경로를 안내하고,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(또는 조제)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(항코드를 U항 /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)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확인경로 >

- ① 요양기관정보마당(<https://medicare.nhis.or.kr>) 접속
- ②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... 비회원 열람 불가
- ③ 좌측 상단 1)기본정보 클릭 → 2)커뮤니티 내 FAQ 클릭 → 3)의약품 협상 카테고리 클릭
- ④ 「**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**」 게시글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

. 끝.

대한의사협회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

